

<p>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p> <p>1. 제안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98. 7.10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98. 7.13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p> <p>2. 제안사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법령이 개정법령에서 삭제되고, 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에 그 근거규정이 새로 제정되어 이에 맞추어 해당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임.</p> <p>3. 주요요점 가.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근거법령이 새로 제정되어 관련부분을 개정하고, 특수학교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자격상실증 제5조의 규</p>		<p>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p> <p>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법규정에 맞추어 개정하고,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사항 및 교육감과 교육장의 재심의요구 부분을 삭제함.</p> <p>다.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제12조제3항에 대한 문제점</p> <p>1)문제가 되는 내용 “회의는 연10회 이상 개최하여 회의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 조문의 규정과 관련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회('96.7.26)시 문제가 제기됨. ○ '96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었음.</p>																																										
<p><문제점 및 개선방안></p>																																												
<table border="1"> <thead> <tr> <th>자료요구</th> <th>의견제출대상</th> <th>문 제 점</th> <th>개 선 방 안</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한국교육개발원</td> <td>○ 연10회 이상 개최는 어려움</td> <td>○ 연4~6회로 완화 ○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td> </tr> <tr> <td rowspan="2">'96행정사무감사</td> <td>안장강 위원</td> <td>○ 연10회 이상 개최는 너무 많으며, ○ 형식적인 심의 ○ 운영위원의 시간 손실</td> <td>○ 강제 규정 완화 ○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td> </tr> <tr> <td>고승중 이수호 위원</td> <td>○ 회의개최 회수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초</th> <th colspan="2">중</th> <th colspan="2">고</th> <th colspan="2">계</th> </tr> <tr> <th>회수</th> <th>평균</th> <th>회수</th> <th>평균</th> <th>회수</th> <th>평균</th> <th>회수</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1,850</td> <td>3.9</td> <td>922</td> <td>3.8</td> <td>261</td> <td>3.4</td> <td>3,033</td> <td>3.8</td> </tr> </tbody> </table> </td> <td></td> </tr> </tbody> </table>		자료요구	의견제출대상	문 제 점	개 선 방 안	한국교육개발원		○ 연10회 이상 개최는 어려움	○ 연4~6회로 완화 ○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	'96행정사무감사	안장강 위원	○ 연10회 이상 개최는 너무 많으며, ○ 형식적인 심의 ○ 운영위원의 시간 손실	○ 강제 규정 완화 ○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	고승중 이수호 위원	○ 회의개최 회수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초</th> <th colspan="2">중</th> <th colspan="2">고</th> <th colspan="2">계</th> </tr> <tr> <th>회수</th> <th>평균</th> <th>회수</th> <th>평균</th> <th>회수</th> <th>평균</th> <th>회수</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1,850</td> <td>3.9</td> <td>922</td> <td>3.8</td> <td>261</td> <td>3.4</td> <td>3,033</td> <td>3.8</td> </tr> </tbody> </table>	초		중		고		계		회수	평균	회수	평균	회수	평균	회수	평균	1,850	3.9	922	3.8	261	3.4	3,033	3.8		<p>2)문제점 ○ 대부분의 학교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회수(연10회 이상)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 학사 일정 계획이 학기초인 3~4월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회의 안건이 없는 경우에도 회의를 소집해야 함. ○ 잦은 회의소집으로 학부모, 지역위원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회의 참석률이 낮음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회수는 학</p>		<p>사운영에 따른 융통성을 확보하고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어렵게 함.</p> <p>3)대 책 ○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회수는 학교 규정에 위임하고 회의일수를 완화하여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이 관계 법규준수를 가능하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p>	
자료요구	의견제출대상	문 제 점	개 선 방 안																																									
한국교육개발원		○ 연10회 이상 개최는 어려움	○ 연4~6회로 완화 ○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																																									
'96행정사무감사	안장강 위원	○ 연10회 이상 개최는 너무 많으며, ○ 형식적인 심의 ○ 운영위원의 시간 손실	○ 강제 규정 완화 ○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																																									
	고승중 이수호 위원	○ 회의개최 회수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초</th> <th colspan="2">중</th> <th colspan="2">고</th> <th colspan="2">계</th> </tr> <tr> <th>회수</th> <th>평균</th> <th>회수</th> <th>평균</th> <th>회수</th> <th>평균</th> <th>회수</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1,850</td> <td>3.9</td> <td>922</td> <td>3.8</td> <td>261</td> <td>3.4</td> <td>3,033</td> <td>3.8</td> </tr> </tbody> </table>	초		중		고		계		회수	평균	회수	평균	회수	평균	회수	평균	1,850	3.9	922	3.8	261	3.4	3,033	3.8																		
초		중		고		계																																						
회수	평균	회수	평균	회수	평균	회수	평균																																					
1,850	3.9	922	3.8	261	3.4	3,033	3.8																																					

4.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배경 및 연혁

가. 설치배경

'95. 3. 31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와 통제 중심의 학교운영을 지양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교육의 민주·자치 정신을 구현코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나. 연혁

- '95. 5.31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
- '95. 9. 1 '95 학교운영위원회 시범 실시
- '95.12.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5069호)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 '96. 2.2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4924호)
- '96. 5.10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제3289호)
- '96. 5.30 제1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807개교: 국·공립 805교, 사립 2교)
- '97.12.13 초·중등교육법 제정(법률 제5438호)
- '98. 2.2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15663호)
- '98. 7. 동조례 개정안 제출(교육감→시의회)

5.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가. 심사결과: '98.5.29 제29회 임시회 제1차 회의

- 1) 소위원회 제1차 회의('98.6.11): 제안설명·질의답변
- 2) 소위원회 제2차 회의('98.6. 2): 심의·의결

나. 심사결과(수정의결)

동조례 제12조 제3항 중 "회의일수는 당해 학년도 기간중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회의는 연 10회이상 개최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야 한다로 수정함.

6. 검토보고

■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 조례는 '95.5.31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교육의 민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즉"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조례 제3289(96.5.10)호로 제정공포되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동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에 그 근거규정이 새로 제정되어 관련부분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각 개정조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 조례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근거법령이 새로 제정되어 관련부분을 개정하고, 특수학교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자격상실증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또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맞추어 개정하고,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및 교육감, 지역교육장의 재심의 요구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요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7조의 위원의 자격상실증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을 상실할 경우 어떻게 조치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 이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요인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도 임기중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어떻게 조치한다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므로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충분한 토의와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둘째, 제12조제3항 “회의는 연10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협의회('96.7.26)시 지역교육장들의 의견제기와 또한 서울시 교육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나타난 의견들에 따를 것 같으면 연간 운영위원회 개최회수는 평균 3.8회로서 연 10회에는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각 시·도의 조례중 회수를 규정하는 곳은 대전교육청에서 연 6회 이상 개최한다 하였고 서울을 제외한 여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회수에 관한 규정이 전무합니다.

이와 같이 지키지도 못할 규정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개선방안 협의회시 제기된 바와 같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회수는 학사운영에 따른 융통성을 확보하고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회의일수를 완화하여 관계법규 준수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서울 도심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해당된 보통교과과정 학원과 고시학원을 도심 중심 5킬로미터내에서는 설립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수도권정비

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98.2.20, 대통령령 제15650호) 위의 조례로 제한한 도심지 학원설립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우리 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원설립을 제한한 동일건물내 동일교습과정 학원의 설립을 허용하고, 법규에 명시되지 않아 수강료 초과징수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이 빈발하므로 교습시간사이 휴식시간을 두도록 하여 학습자를 보호하며,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자동차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의 현실에 맞는 개정요청이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여 학원 본래기능의 활성화와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으로 사문화되어 불필요한 현행 제4조제1항의 도로원표 중심 반지름 5킬로미터 내에서는 보통교과 및 성인고시학원의 신설 및 증원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하고
- 나. 현행 제4조제2항에서 제한한 동일건물내 동일교습과정 학원 및 교습소의 등록과 신고를 금지한 동 규정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행정규제로 우리 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 설립을 허용하도록 권고되어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 다. 학원운영에 있어 법령 등에 교습시간 사이 휴식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수강료를 초과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이 제기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부제내 각단위 교습시간 사이 적정한 휴식시간을 두도록 하고,
- 라. 법령으로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로 위탁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를 원활하게 하고자 관할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장 및 강사명단을 반기별로 한국학원총연합회로 통보하도록 하고
- 마.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생활편익시설내 설립이 가능한 학원으로 보습학원이 명시되지 않아(제2조제2항마목 : 예능·가정·사무·어학 및 컴퓨터 학원만 가능)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330제곱미터의 범위내에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정했던 조항을 명문화하는